

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- 32
----------	-----------

발의연월일 2006년 7월 20 일

발 의 자 신주범 의원 외 9 인

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8조·제39조·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4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거창군의회 연간 총회의일수를 80일 이내로 규정하고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조)
-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,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함(안 제3조)
-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7월 10일,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11월 25일로 함(안 제4조)
-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8조·제39조·제41조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

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거창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38조·제39조·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“령”이라 한다.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.)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연간 총회의 일수)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

제3조(회기) ①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·단축 조정할 수 있다.

②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.

제4조(집회일) ①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·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.

제5조(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③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하고, 군민의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거창군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최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.